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재가입용)(무배당)(26.05) 상품요약서

가.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

(1) 반려동물보장 관련 기본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반려동물의료비II (고양이)	1년	전기납	만1세~만19세

(2) 반려동물보장 관련 선택계약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 (주요치료)(고양이)	1년	전기납	만1세~만19세

주) 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국가동물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반려동물보장 관련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반려동물의 나이를 의미함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① 보험가입대상 반려동물의 품종, 건물(물건)의 급수 및 영위직종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가입대상의 품종, 건물구조, 영위직종, 과거 사고유무, 소재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은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무배당)(25.05)" 및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무배당)(26.01)"의 사업방법서 별지 "재가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 ④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1)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주요치료)(고양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장기보험의 특별약관 기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상품명	담보명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무배당)(25.05)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MRI/CT, 연간 1회한)(고양이)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특정처치(이물제거), 연간 2회한)(고양이)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특정약물치료, 연간 6회한)(고양이)
KB 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고양이)(무배당)(26.01)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주요치료)(고양이)

- ⑤ 반려동물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단,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함) 특정 질병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보험기간, 납입기간

"1) 가입자격제한, □ 가입가능나이"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각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반려동물의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재가입에 관한 사항

가) 대상

- 반려동물의료비II(고양이)
-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주요치료)(고양이)

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1)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1년
- 2) 재가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는 19세 이내로 함
- 3)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4)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
(가) 재가입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나)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 중인 동일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에서 정한 장기손해보험에 한함, 이하 「반려동물보험 상품」이라 함다.)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다만, 재가입 계약이 직전계약보다 보장내용 및 범위 등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내용에 대해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음.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함.
- 6) 계약자는 5)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7) 5) 및 6)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하며, 연장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함. 다만,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날 기준으로 매년 현재의 예정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부가보험요율) 적용 및 반려동물의 연령 증가 등의 사유로 보험요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때의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함.
- 8) 7)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최초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연장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최초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함.
- 9) 7)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함. 회사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으면 5)의 내용과 계약자에게 90일 이내 재가입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10) 9)에 따라 계약자에게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최초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계약은 해지됨

- 11) 7)에 따라 보험계약이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3) 및 4)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4)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됨.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됨.(단, 최초연장된 날로부터 90일 이전에는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12) 9) 내지 11)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함.
- 13)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계약자 안내사항」을 교부하고 계약자 서명을 징구함.

□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① 동물등록 우대 할인

- 1)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알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65(2022.01.26)」)에 따라 본 계약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동물등록증 등) 제출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물등록번호 인증을 통하여 당사에 알린 경우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함.

단, 동일 보험증권 기준으로 가입한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인 경우, 각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등록 우대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적용함.

구분	동물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할인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가입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료의 5%

다만, 직전계약에서 관련된 증빙서류가 이미 확인되어 「동물등록 우대 할인」이 적용된 경우, 동일 반려동물에 대한 재가입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절차 없이 「동물등록 우대 할인」을 적용함.

2) 할인적용 방법

- ① 가입시 신청 : 직전계약에서 「동물등록 우대 할인」이 이미 적용된 계약에 한함.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함
- ② 가입후 신청 : 관련된 증빙자료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함(단, 접수시점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부활(효력회복)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된 후 향후 납입할 보험료부터 할인함)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알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65(2022.01.26)」)이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련 시범사업의 법제화,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동물등록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 시범사업의 법제화,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다펫 할인III

- 1) 동일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한함)를 기준으로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모두 당사의 상품^{주)}에 가입된 경우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함.(단, 「다펫 할인III」 제도가 부가되어 있는 상품의 계약을 최소 1건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이미 계약이 성립된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 보험증권에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가입된 경우에 한함.)

주)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에서 정한 장기손해보험에 한함.

구분	동일 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입한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 시
할인율	-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 3마리 이하인 경우 :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가입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료의 5%
	- 반려동물이 4마리 이상인 경우 :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가입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료의 10%

2) 할인적용 방법

- 가입시 신청 : 가입 시 1)의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함
단, 동일 보험증권에 가입하는 반려동물이 1마리인 경우, 계약체결일 전일 기준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이미 계약이 성립된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입후 신청 : 반려동물 수(동일 피보험자 기준)가 변경되어 1)의 적용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차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함

※ 「다펫 할인III」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품의 계약에 한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 반려동물이 가입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1)의 적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시점 이후 차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다펫 할인III」는 적용되지 않음.

-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다펫 할인III」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후, 부활(효력회복)하여 위 1)에서 정한 조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차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할인율을 새로이 적용함.
- ※ 단, 「다펫 할인III」에 있어 반려동물이란 개(犬) 또는 고양이(猫)를 말함.

③ 유기동물 입양 할인

- 1)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항,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이전에 입양되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된 입양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할인을 적용함.
단, 동일 보험증권 기준으로 가입한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인 경우, 각 반려동물에 대하여 유기동물 입양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여 적용함.

구분	입양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이 가입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료의 3%

다만, 직전계약에서 관련된 증빙서류가 이미 확인되어 「유기동물 입양 할인」이 적용된 경우, 동일 반려동물에 대한 재가입 시 입양 확인 절차 없이 「유기동물 입양 할인」을 적용함.

- 2) 할인적용 방법
- 직전계약에서 「유기동물 입양 할인」이 이미 적용된 계약에 한함 :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함
- 3) 제출 증빙서류 :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된 입양증명서

④ ‘① 동물등록 우대 할인’, ‘② 다펫 할인III’ 및 ‘③ 유기동물 입양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함.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범위내에서 적용함

□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반려동물의료비II(고양이)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1일당 한도 및 연간 한도는 입/통원 각각 적용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실속형 [1일당 한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0만원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15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② 기본형 I [1일당 한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5만원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③ 기본형 II [1일당 한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5만원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250만원 [연간 한도] 2,000만원 ④ 고급형 II [1일당 한도]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30만원 수술을 한 날의 경우 : 300만원 [연간 한도] 2,000만원	가입금액 한도

□ 선택특약

◇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 II (주요치료)(고양이)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치료구분별 대상원인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반려동물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에서 반려동물의료비보험금 및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상비용을 곱한 금액을 치료구분별 지급한도 및 보상한도액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table> <tr> <th>치료구분</th><th>대상원인</th><th>치료구분별 보상한도액</th></tr> <tr> <td>MRI/CT</td><td>상해 또는 질병</td><td>100만원</td></tr> <tr> <td rowspan="2">특정처치 (이물제거)</td><td>이물제거 (내시경)</td><td>200만원</td></tr> <tr> <td>이물제거(구 토유도약물)</td><td>20만원</td></tr> <tr> <td>특정약물치료II</td><td>상해 또는 질병</td><td>10만원</td></tr> <tr> <td>항암약물치료</td><td>암</td><td>30만원</td></tr> </table>	치료구분	대상원인	치료구분별 보상한도액	MRI/CT	상해 또는 질병	100만원	특정처치 (이물제거)	이물제거 (내시경)	200만원	이물제거(구 토유도약물)	20만원	특정약물치료II	상해 또는 질병	10만원	항암약물치료	암	30만원	가입금액 한도 (MRI/CT : 연간1회한, 특정처치(이물제거) : 연간2회한, 항암약물치료 : 연간6회한, 특정약물치료 II : 연간12회한)
치료구분	대상원인	치료구분별 보상한도액																	
MRI/CT	상해 또는 질병	100만원																	
특정처치 (이물제거)	이물제거 (내시경)	200만원																	
	이물제거(구 토유도약물)	20만원																	
특정약물치료II	상해 또는 질병	10만원																	
항암약물치료	암	30만원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재물손해 등 관련 보장은 재물손해 등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③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보험금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료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5%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5세, 코리안숏헤어, 자기부담금 3만원, 보상비율 70%, 고급형II 기준)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반려동물의료비II (고양이)	350,503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1세, 코리안숏헤어, 1년만기 전기납)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86.0	86.0

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 ◎ 가입기준 : 반려동물 1세, 코리안숏헤어, 전기납, 자기부담금 3만원, 보상비율 70%, 월 39,737원
고급형II(입/통원 각각 1일당 30만원/수술 1일당 300만원/연간 한도 2천만원)
- ◎ 기본계약 : 반려동물의료비II(고양이) 2천만원
- ◎ 선택계약 : 반려동물의료비확장보장II(주요치료)(고양이) 1천만원

(단위 : 원, %)

구 분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3개월	119,211	0	0.0
6개월	238,422	0	0.0
9개월	357,633	0	0.0
1년(만기)	476,844	0	0.0

주1) 상기 예상환급금/환급률은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보장부분 환급금을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이 계약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 및 공시이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환급금과 적립부분 환급금이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문답식 해설(Q/A)

□ 가입이 제한되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이 상품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猫)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고양이(猫)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 하는 고양이(猫)
2. 특수한 목적의 고양이(猫)
3.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 하는 고양이(猫)
4.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